

화재보험 요율의 적용방법

-보험계약자 이해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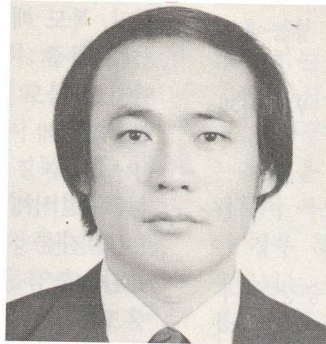
1. 서 설

보험계약은 사회경제제도인 보험을 이용하는 당사자 관계를 권리·의무 관계로 형성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상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가입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638조)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기에 보험상품은 다른 상품 즉 식료품이나 완구등과 같이 일반 사람이 직접 먹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일종의 무형의 상품(약속에 의한 권리·의무이행)이므로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의 일반적인 기초상식을 꼭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특수건물을 중심으로 화재보험요율 적용방법을 설명하고 적절한 계약(요율적용 및 약관등)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인 보험상식을 간단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보험요율의 구성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장래의



윤 동 혁
〈본협회 업무부 차장〉

일정기간중에 우연히 발생하는 재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보험료 부분과 부가보험료 부분으로 구성된다. 순보험료는 보통위험과 이상위험에 대비한 손해보상금의 충당에 지급되는 부분을 일컬으며 부가보험료는 경비(인건비, 물건비, 대리점수수료등)와 이윤에 충당되는 부분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료는 장래의 미확정 재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보험요율은 실제에 있어서는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이윤률등의 예정률로서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감독관청에서는 예정손해율과 실제의 손해율이 현격하게 차이

가 날 때에는 보험요율을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3. 약관에 의한 화재보험요율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화재보험요율은 두가지가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문약관-보험계약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영문약관-보험계약자 사용제한 <재무부 보험1223-189(1973. 2.21)> 註 1.2 참조.

국문약관은 화재보험요율서(재무부장관 승인)에 의하여 요율을 산출 적용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에서 공히 사용하고 있는 협정요율이며 영문약관은 사용시 마다 재보험자에 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물 배치도 및 구조, 작업공정도 service상태, 위험품취급사항 등)를 영문으로 작성,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복잡한 점이 있다.

가. 보험계약의 성질

(1) 보험계약은 불요식의낙성계약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은 필요없으며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상법상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시부터 보험자(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한다는 규정(상법 656조)이 있지만 이것은 보험기간의 시기에 관한 것이지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계되는 것

(註1) 영문약관 사용 가능 업체

1. 보험가입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동일구내에 보험으로서 계약당 5만불 초과)

2. 외국으로부터 차관업차나 합작투자업체

3.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 소유의 보험시설

4. 재보험 조건상의 제한

5. 재보험료율의 사전협약
6. 계약조건

7. 적금요율(재보험자의 제서요율)
8. 군부: 화재보험 제1차 초과액 재보험 및 화재보험특약서.

(註2) 영문약관의 종류

1. F O C(Foreign) Policy Form : 영국
2. F O C(Fire offices Committee) : 화재보험자를 위하여 제정한 영문약관.

3. Standard Fire Insurance Policy of the state of New York : 뉴욕주화재보험약관으로 통상 American standard Fire Policy 라고 칭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미국차관업체들만 사용하고 있음.

4. Commercial Union Policy Form : F O C(Foreign) Policy 와 동종의 것인데 담보 계약에만 사용하고 있음.

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여 준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2) 보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급여에 대립하는 보험자의 급여를 사고발생의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손해액)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불발생을 묻지않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는 기대를 통하여 피보험자(보험목적의 소유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이른바 위험부담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위험부담은 그 자체가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출연(出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 채무에 대하여 보험자의 위험부담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채무로서 발생하고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쌍방의 채무는 서로 구속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해석한다.

(3) 보험계약은 상행위이다. 영업으로 보험을 인수하기 위한 보험계약은 상행위이다(상법 46조 17호).

(4) 보험계약은 불확정 사고에 관한 것이다.

보험사고는 그 발생여부, 발생시기 또는 발생방법이 불확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불확정성은 객관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5)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이고 또한 최대선의의 계약이라고 한다.

양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익이 우연성을 가지는 계약 즉 양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구체적 급여인 보험료와 보험금의 쌍방 또는 적어도 일방의 유무 또는 대소가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의미에서 사행계약의 일종이다.

또 「최대선의의 계약」이라 하는 것도 원래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최대선의의 계약이라고 말한다.

(6)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에 속한다.

보험자가 미리 정한 표준적 약관 즉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보통보험약관은 거래를 간편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나,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이 정하여 질 염려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영업허가 신청시에 보통보험약관을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보험 5조 3항).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담보범위와 면책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하겠다. <다음호에 계속>